
농식품부 주요 기금 통합 추진계획(안)

- 「[가칭] 농업발전기금」 설치 추진방안(안) -



농림축산식품부

농식품부 주요 기금 통합 추진계획(안)

(1) 추진 배경

- 농식품부가 운용 중인 7개 기금* 가운데 상당수는 자체 재원만으로 앞으로의 사업비 소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

* 농안기금, 농지기금, FTA기금, 축발기금, 직불기금, 재보험기금, 양곡증권정리기금

- 기금은 자체 재원(부담금 등)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, '지출↑ + 자체 재원↓' 흐름이 이어지며 기금 재정 여건 악화
- 농특회계 전입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 기금 외에는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워 채무가 누적*되고, 필요한 지출마저 제약

* 농지·농안·축발·FTA 기금은 공자기금 예수금 잔액은 총 3.1조원 수준이며, 연간 이자 부담은 1,200억원 내외로 추산('26.8월 기준)

- 개별 기금의 규모가 작아, 효율적 집행과 여유자금의 신축적 운영에 한계
 - 피해보전직불, 가격안정제와 같은 예비비성 성격의 사업에서 대규모 소요가 발생할 경우, 이를 감당할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기 곤란
- 정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소관 기금 체계의 재정비 필요
 - 기금이 처음 설치된 '60~'00년대와 달리, 기후변화, 고령화, AX 등 이전에 없던 과제에 대응하도록 요구받는 상황
 - 반면, 기금 간 칸막이로 인해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한 여유 자원 재배분과 여건에 맞춘 탄력적 기금운용 곤란

- 농특세 세입 증가* 계기로 기금을 통합하여, 기금의 부족 재원·채무를 해소하는 동시에 기금 재정 지속가능성과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

* ('25.7월, 누적) 46,376억원 → ('26.7월, 누적) 129,876억원(+83,500억원, 180.1%)

[2] 통합기금 설치 추진 방안(안)

〈 기본 방향 〉

- ◆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·농촌 과제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, 중장기적으로 흔들림 없는 재정 기반 마련
 - 재원은 늘리고, 채무는 덜어내며, 기금 간 칸막이는 낮추는 방향으로 기금 통합

1

통합대상 및 기금 명칭(안)

- (통합대상) ‘농지관리기금’, ‘농산물가격안정기금’, ‘FTA기금’
 - 일정 수준 자체 재원이 있고, 농업인을 폭넓게 지원하는 사업성 기금 3개(농지, 농안, FTA)를 통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
 - 목적·대상이 한정되거나, 통합 실익이 없는 기금은 현행대로 존치
- (명칭) ‘(가칭) 농업발전기금’
 - 통합되는 기금 간의 형평성, 법체계 정합성, 기금 통합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 기금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검토

2

재원 구조 개편

- (재원 구성) 현행 재원은 그대로 유지하고,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받을 근거를 새로 마련해 조달 기반을 확대
 - (기존) 농지보전부담금, TRQ 수입자 부담금 등 법정 납입금, 융자금 원리금, 기금운용 수익금, 재산 매각 대금·임대료 등
 - (신설) 농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
- (채무·결손 처리) 기존 누적 채무와 세출 확대에 예상되는 결손금 해소
 - 통합 시점에 과거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정리하고, '27년에 발생 예상되는 결손을 농특회계 여유자금에서 전입 받아 보전
 - 융자금 회수 등 사업 관리와 집행을 철저히 해 결손 발생을 최소화

- (운영 주체) 농식품부 직접 운영하되, 자금관리는 소속기관·공공기관에 위탁
 - 계획 수립, 자금 운용, 회계·결산 등 핵심 기능은 농식품부가 하고, 수입·지출 채관·채무 관리, 자금 지급회수 등은 농어촌공사·AT·종자원 등에 위탁
- (계정) 형식적인 통합이 아닌 재원·사업·자산 등을 통합하는 실질적인 기금 통합을 위해 단일계정으로 운영
 - 각 기존 기금의 고유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안에 조문 마련

(3) 기대효과

- ① (정책 효과성)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신규 과제 대응력 제고
 - 재원이 부족해 지출 축소 우려가 있던 가격안정제, 농산물 수급 안정, 농지매입 등 주요 정책사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기반 마련
 - 기후변화, 고령화, AX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역할 확대
- ② (재정 건전성) 결손이 되풀이되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
 - 특정 부담금 수입에 기대던 방식에서 벗어나, 법률에 명시된 근거를 토대로 농특회계 전입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
 - 누적된 채무를 정리한 상태로 출범하고, 농특회계 전입금 등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을 방지
- ③ (운용 탄력성) 연중 발생하는 긴급 소요에 대한 대응 여력 확대
 - 사업 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현안에 신속 대응 가능
 -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조정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한도 확대